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및 공사비용 국고부담>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69호)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76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1. 이학영의원안(의안번호 제2210969호) ····· 1

2. 전진숙의원안(의안번호 제2211776호) ····· 2

Ⅲ. 검토의견 ····· 3

1.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 및 공사비용 국고부담 ····· 3

※ 참고자료 ····· 15

1.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제방정비 현황 ····· 15

2.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수해 발생현황 ····· 15

3. 재정분권 추진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전환사업 개요 ····· 16

4.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이양 현황 ····· 17

5. 홍수위험지도 개요 ····· 18

6. 가뭄취약지도 개요 ····· 19

Ⅰ. 제안경위

2025년 6월 20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025년 7월 28일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학영의원안

전국 하천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및 가뭄대응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의 발생이 빈번해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서 홍수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으로 시민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바, 이같은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환경부는 지난 2022년부터 기후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홍수안전 확보사업과 친수사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통

합하천사업'을 공고하고 대상 지역을 선정했으나,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등).

2. 전진숙의원안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재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 국가하천 정비율은 81.7%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 하천관리수준이 미흡함. 2023년 홍수 피해 규모도 국가하천은 176억원임에 반해 지방하천은 1,627억에 달함.

이에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25조 및 제27조의2, 제59조제2항).

Ⅳ. 검토의견

1.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 및 공사비용 국고부담

개정안은 ①홍수·가뭄 위험지역의 지방하천[1]과 ②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해당하는 하천[2] 및 ③국가하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방하천 중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하천[3]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의2 신설),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는 환경부장관이 국고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27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이학영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신 설>	제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	제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홍수·가뭄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이학영의원안)
2)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전진숙의원안)
3) 이학영의원안 및 전진숙의원안 공통

	다.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홍수·가뭄 위험지역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의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서 하천을 보전하고 도시침수 및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하천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6항의 국가하천 규정을 준용한다.	정할 수 있다. 1.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하천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으로서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하천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6항의 국가하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 ~ ⑧ (생 략) <신 설>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는 환경부장관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 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한다.

	이 시행한다. ②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배수영향구간과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7조의2 및 제27조제4항----------.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는데, 국토보전 상 또는 국민경제 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은 국가하천이 되고,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은 지방하천이 되며,[4]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함.[5]

[표] 국가하천의 지정기준(법 제7조제2항 각 호)

1.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 200㎢ 미만인 하천으로서
가.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법람구역 내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4) **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각 목 생략)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5) **법 제2조(정의)**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으며[6],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제방, 저수로, 보 등)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함[7].

한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부담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 부담으로 하되,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의 비용은 시·도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함[8].

그런데 지방하천의 경우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방정비 완료구간이 48.8%(국가하천은 78.9%),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은 67.4%(국가

---

6) **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7) **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8) **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하천은 86.5%)로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한 상황인 바,[9] 이로 인해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 유역에서 보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10]

이에 더해 기존에 국고보조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및 권한이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11][12]됨에 따라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하천정비수준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천관리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 현재
계	10,083.8	10,360.6	10,766.8	지방세 지원 (국비 지원 중단)
국비	5,687.0	5,691.0	5,696.8	
지방비	4396.8	4669.6	5070.0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현행법령 상으로도 ①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13][14]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공사를 시행하며 이를 국고부담으로 하거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시행

9) 한국하천일람, 2022.12.31. 기준.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2012년(2022년 기준 10년 내) 이후 분만 반영
10)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홍수피해 규모는 국가하천 176억원, 지방하천 1,627억원으로 집계됨.
11) '18년 범정부 1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20년부터 국고보조가 중단됨[지방소비세율 인상(11%→21%)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
12) 참고자료3. 재정분권 추진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전환사업 개요, 참고자료4.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이양 현황 등 참고
13) **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⑤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14) 참고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서는 하천을 비롯한 기반시설 홍수안전 강화 및 예방 투자 확대 전략을 위한 과제로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관계부처합동,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p.98.

할 하천공사를 대행[15]하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16]함으로써 하천 관리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나, ①국가하천 승격 시, 하천구역 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발생[17]하면서 국가가 하천공사 비용과는 별도로 매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②하천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사업 대상·규모·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바, 유연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표] 하천 유형별 사업시행 및 재원조달 주체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①	비고②
		지방하천	국가지원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하천공사 대행
단계별 시행주체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국가	국가	지자체
	하천공사	지자체	국가	국가	국가
	유지・보수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재원조달 주체	공사비	지자체	국가	국가	국가
	유지・보수비	지자체	지자체	국고보조	지자체
	토지매수청구	불가	불가	가능	불가

*승격 국가하천(5대강 본류는 제외)의 유지·보수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며, 국고보조 대상
(출처: 환경부)

15) **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16) **법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환경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17) **법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①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008년 4월 7일을 말한다)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등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18]되었으나 제도의 단계적 도입 필요성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에 관련 예산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임을 고려하여 ①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②이와 관련된 공사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하는 등 일부 내용만 반영하여 의결된 바 있음[19][20].

이에 개정안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홍수·가뭄 위험지역[21]의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 중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는 국고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관리책임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1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979호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345호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699호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등 3건)
19) 법률 제19667호, 2023. 8. 16 공포·시행
20)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소극적인 지정·지원에 대한 우려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영향구간 외 지류·지천 등에 대한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제21대 국회 제408회 국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 제408회 국회 제2차 전체회의)
2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홍수·가뭄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이학영의원안)

첫째, 이학영의원안 제7조의2제1항제1호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함)제7조제1항[22]에 따른 홍수·가뭄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수자원법의 해당 조항은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의 작성 근거조항으로,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수방대책과 가뭄대책 수립을 위해 전국 단위(국가하천 73개소, 지방하천 3,767개소 및 전국 3,500개 읍·면·동 대상)로 작성하여 활용 중인 바, 개정안의 “홍수·가뭄 위험지역”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23](참고자료 5. 홍수위험지도 개요, 참고자료 6. 가뭄취약지도 개요 참조).

둘째, 전진숙의원안 제25조제2항 단서는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하천관리청(시·도지사)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설계)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현행법 제27조제1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24], 같은 조 제4항도 함께 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

---

2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며, 가뭄이 발생하여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23) 현행법에 홍수위험지도의 일정 수위 이상의 침수심이나, 가뭄취약지도의 취약성 등급에 따라 위험지역을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4) 현행법 제28조제1항(하천공사 대행)의 경우와 같이 개정안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

관이 시행한 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또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25].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를 국고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26],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①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및 공사의 국가 시행(안 제7조의2, 제27조의2)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지방이양사업을 국가로 환원하는 효과를 가져와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취지에 역행하며, ②2026년까지 지방이양 사업에 대해 국비가 한시적으로 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없이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현행법 제27조제4항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공사에 대한 부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로 확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시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26)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를 국고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법 개정) 이후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지정·고시('24, 411개소, 596㎞)하고,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24~'25, 20개소, 467㎞)하여 국가가 직접 정비 추진 중이라고 밝힘.

문 의 처
02)6788-5547

※ 참고자료

1.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제방정비 현황

구 분	하천 제방정비 현황						
	합계 (km)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	
		(km)	(%)	(km)	(%)	(km)	(%)
합 계	36,629	19,039	52.0	10,098	27,6	7,492	20.5
국 가	3,900	3,074	78.9	606	15.5	220	5.7
지 방	32,729	15,966	48.8	9,492	29.0	7,272	22.2

자료 : 한국하천일람(2023. 12. 31. 기준)

2.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수해 발생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재난명	국가하천		지방하천	
		시설수	피해액	시설수	피해액
2018	합계	5	684	258	13,568
	6.26~7.4 호우, 제7호 태풍	-	-	11	452
	8.26~9.1 호우	5	684	155	8,820
	제19호 태풍 솔릭	-	-	5	187
	제25호 태풍 콩레이	-	-	87	4,109
2019	합 계	4	215	232	24,679
	제18호 태풍 미탁	4	215	232	24,679
2020	합 계	153	48,916	1,276	147,274
	7.28~8.11 호우	148	48,723	1,011	128,622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5	193	265	18,652
2021	합 계	-	-	209	14,673
	7.5~7.8 집중호우	-	-	98	7,314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	-	111	7,359
2022	합 계	25	3,234	543	131,252
	8.8~8.17 집중호우	23	2,970	427	58,803
	제11호 태풍 힌남노	2	264	116	72,449
2023	합 계	42	17,560	735	162,669
	6.27.~7.27. 호우	42	17,560	616	147,082
	제6호 태풍 카눈	-	-	119	15,587
2024	합 계	10	6,088	581	68,142
	7.8.~7.19. 호우	9	6,084	452	61,713
	9.19.~9.21. 호우	1	4	129	6,429
2025	합 계	78	10,676	939	219,162
	7.16.~7.20 호우	78	10,676	939	219,162
계		239	76,697	3,834	562,257

자료 : NDMS(재난관리업무포털)

3. 재정분권 추진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전환사업 개요

□ 전환사업 개요

○ 1단계('20년) 및 2단계('22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

*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단계 전환사업(총 39개)에 포함

- 균특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

○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이양 사업의 **'19년 국비규모**(약 3.56조원)**만큼 한시적으로 보전**(~'26년)

□ 재원보전 기준

○ (**배분기준**) 매년 자치단체의 사업수행 적정성, 집행실적, 광역-기초 분담비율 등을 평가하여 자치단체별 보전규모를 일부 조정

* '19년 국비규모인 3.56조원(고정)을 매년 지자체별 배분

○ (**지급방법**) 전환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단체별 보전규모 사전통지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전환사업계정**을 통해 보전금 지급

* (성과평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행안부에서 보전금이 그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여부를 확인·평가 후 다음연도 전환사업 재원보전 규모에 반영

○ (**예산편성**) 기존 국비 보조비율(50%) 유지, 사업 종료시 기존 세부 사업 내 신규사업 편성 원칙

- 재원보전 비용은 **국비보조 방식이 아닌 지방비를 추가 편성**하는 개념으로 **전환사업은 모두 지방비로만 구성**

○ (**집행원칙**) **전환사업 보전 목적에 반하는 재정지출 금지**

4.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이양 현황

□ 지방하천 이양 추진경과

○ **(이양경과)**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1.14조원)' 포함 **3.56조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사업을 지자체에 이양**('20년)

○ **(재정분권) 지방소비세율 인상**(10%p, 8.5조원 규모)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 국가-지방 **전환사업은 총 39개 사업, 3.56조원 규모**로 지방세법 및 지방기금법을 통해 3.56조원은 **반드시 전환사업에 투자하도록 규정** (다만 사업간 배분은 자율적 변경 가능)

지방이양 전 ('19)			지방이양 후 ('20)	
균형발전특별회계 ('19년 총 10.7조원)	**전환사업 3.5조**	⇒	**지방소비세 확충분 ('20년 8.5조원)**	전환사업 **3.56조원 보전**
일반회계 등	**전환사업 0.06조**		※ 추가 확충분은 지역별 가중치 등 적용하여 배분	

※ 안정적 전환사업 지원을 위해 '19년 국비규모(약 3.56조원)만큼 한시적 보전(~'26)

□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현황

○ **(예산) 지방이양 후**('20년) **소폭 감소** ('19년 대비 '25년 △712억원, △6.6%)

※ ('19년) 1.08조 → ('20년) 1.11조 → ('21년) 1.04조 → ('22년) 1.04조 → ('23년) 1.05조 → ('24년) 1.10조 → ('25년) 1.01조

- 경남 등 **7개 지자체는 증가**, 부산 등 **10개 지자체는 감소**

※ (증가) 울산, 경기, 경남 등 (감소) 부산△89.1%, 충남△33.7%, 경북△14.5% 등
서울은 지방이양 전에도 국비보조 없이 자체 정비 실시

○ **(관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환사업 운영기준**」을 통해 **성과관리 시행 중**('20~, 행안부)

※ 예산의 적정편성·집행 등을 평가하고 미흡 등급 지자체의 일정 금액 감액 및 재배분 실시 중, ('20년 4개 사군, 11억원 감액 / '21년 16개 사군, 110억원 감액 / '22년 30개 사군, 219억원 감액)

○ **(정비율)** 이양 후 **하천정비율은 소폭 상승**하여 정비 정상 추진 중

※ ('18년) 48.1% → ('20년) 47.24% → ('22년) 49.2% → ('23년) 48.8%
'20년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하천정비 보강 필요구간이 확대되어 정비율 감소

5. 홍수위험지도 개요

□ (**목적**) 홍수 예상·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자체 및 관계 부처**의 효율적 **수방대책 수립**을 **지원**, **국민들에게 위험 정보 제공**

□ (**법적근거**) 수자원법 제7조(홍수피해·가뭄상황조사의 실시)

□ 홍수위험지도의 종류

○ (**하천범람위험지도**) **하천의 범람** 또는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하천 주변의 **예상 침수범위**와 **침수깊이**를 나타낸 지도

○ (**도시침수위험지도**) 빗물처리시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도시의 홍수가 **하수관망 등**으로 **배수가 안 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범위**와 **침수깊이**를 나타낸 지도

□ 제작현황('24년 12월말 기준)

○ **(하천범람위험지도)** 전국 국가하천 73개소 전체, 지방하천 3,767개소 중 3,515개소 제작 완료(93.3%)

○ **(도시침수위험지도)** 전국 5,046개 읍면동 중 지자체(서울·부산 등) 자체 작성 포함 3,156개소 제작 완료(62.5%)

- ('01~'03)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범람지도 시범제작
- ('04~'16) 국가하천 대상 하천범람지도제작 추진
- ('16~'21) 지방하천으로 제작 확대 및 도시침수지도 시범사업 추진
- ('21~'24) 도시침수지도 확대 제작

□ (**정보제공**) 제작완료된 홍수위험지도는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floodmap.go.kr)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 ('21.3~) 중

6. 가뭄취약지도 개요

◈ **사전예방** 중심의 가뭄대응 정책 추진 필요에 따라, **가뭄취약지도 작성 및 제공**을 통해 **지역맞춤형 가뭄대응 및 선제적 가뭄정책 수립 지원**

◈ 가뭄취약지도를 활용하여 **지역별 가뭄 특성·원인 진단 및 물공급 능력 평가**로 **선제적 가뭄취약지역 관리 및 물복지 향상 기대**

□ **(가뭄취약지도)** 평가대상(지역)의 가뭄조사, 가뭄발생 특성을 고려한 **가뭄취약성 분석을 통해 지역별(유역별) 가뭄취약 정도를 표시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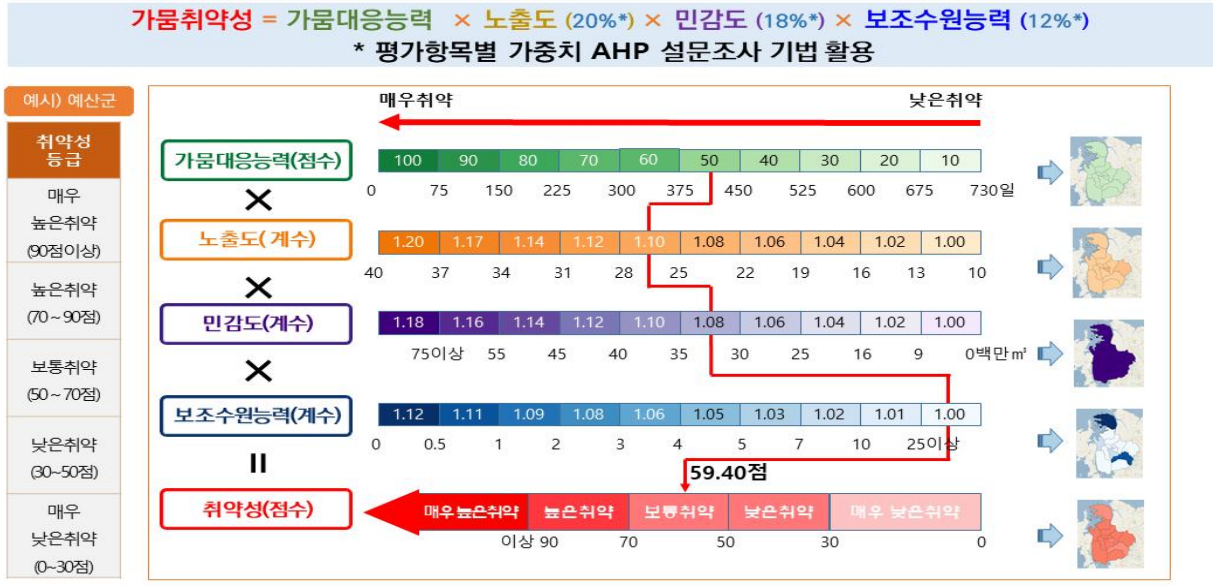

○ **(목적)** 가뭄발생 원인 및 물수급여건 현황·분석 등을 통한 취약성 평가로 지**역별 맞춤형 가뭄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추진현황)** 수자원법 제정('17.7) 및 가뭄대응 종합대책('17.8) 등에 따라, **가뭄취약지도 구축**('18~'23) → **대국민 공개**('23.12월)

○ **(경과)** 가뭄취약지도 작성 지침 제정('22.12월), 전국 가뭄취약지도 완성*('23.6월)

* 전국 250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약 3,493개 읍·면·동단위로 구성

○ **(정보제공)** 지자체 및 대국민 제공('23.12월~, 국가가뭄정보포털)